

[교재용]

『2022년 귀속 연말정산실무』에 소급적용 세법개정(안)으로 반영된 내용 중 2022.12.23.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안확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: 4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(22.7.1.~12.31.) 공제율 상향 : 80%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: 20%, 35% 적용을 2022년 연말까지 1년 연장 수정확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: 12% 또는 15% → 15% 또는 17%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율 : 10% → 20%
--

■ 연말정산실무 세법개정안 수정확정

1.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(조특법 95조의2, 122조의3)

해당면	종 전	수 정
38면, 41면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개 정(안) • 월세액의 12% 또는 15%*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수 정 • 월세액의 15% 또는 17%* </div>
370면 하단 표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$\text{Min}(\text{월세액}, 750\text{만원}) \times 12\%^{\text{㉑}}$ $\text{Min}(\text{월세액}, 750\text{만원}) \times 10\%^{\text{㉒}}$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$\text{Min}(\text{월세액}, 750\text{만원}) \times 17\%^{\text{㉑}}$ $\text{Min}(\text{월세액}, 750\text{만원}) \times 15\%^{\text{㉒}}$ </div>

2.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(조특법 126의2)

	종 전		수 정	
	구 분	공제율	구 분	공제율
39면	㉕ '22년 소비증가분('21년 대비)	10%	㉕ '22년 소비증가분('21년 대비)	20%
	• (소비증가분 공제대상금액) - '22년 귀속분 : ㉑ + ㉒의 10%		• (소비증가분 공제대상금액) - '22년 귀속분 : ㉑ + ㉒의 20%	
278면 표	㉗ [(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- (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× 105%)) + (2022년 전통시장 사용분 - (2021년 전통시장 사용분 × 105%))] × 10% ^㉑		㉗ [(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- (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× 105%)) + (2022년 전통시장 사용분 - (2021년 전통시장 사용분 × 105%))] × 20% ^㉑	

■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흐름도 “★” 표시 중 세법개정안 수정확정

월세세액공제 : 12%*(or 15%*) → **15%(or 17%)**